사업방법서 별지

CEO안심상해보험II(무배당)(26.05)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손해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가. 보험종목의 명칭 : CEO안심상해보험II(무배당)(26.05)

단, 판매채널, 플랜에 따라 보험종목의 명칭 중 'CEO' 부분의 명칭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판매채널에 따른 보험종목의 사용 명칭 예시

: KB든든안심상해보험II(무배당)(26.05)

나. 기타

- 회사는 보험종목의 명칭 중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음

※ 판매경로에 따른 용어 추가 예시

: KB골든라이프 CEO안심상해보험II(무배당)(26.05)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1종 : CEO플랜(금리고정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3년만기	2년납	만15세~90세	월납 연납
		3년납		
	4년만기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만기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나. 2종 : 실속플랜(금리연동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7년만기	3년납	만15세~70세	월납 연납
		5년납		
		7년납		
	10년만기	2년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다. 3종 :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일반상해후유장해(20~79%) 상해수술비	15년만기	3년납	만15세~65세	월납 연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갱신특약을 운영하지 않음)

9. 보험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부분 보험료의 운영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에서 규정한 보장성 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나. 적립보험료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아니함.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추가적립보험료를 운영하지 않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음.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나. 가.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다.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함.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적립부분 적용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한다.

15. 적립부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가. 1종(ŒO플랜(금리고정형))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2.75%로 한다.

나.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보장성-1701 공시이율」로 한다.

16.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1. 1종(ŒO플랜(금리고정형))

- 해당사항 없음.

2. 2종(실속플랜(금리연동형)), 3종(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가. 이 보험의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보장성-1701 공시이율」로 한다.

나.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1-α) + 외부지표금리 × α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frac{A/B + C}{A+C}$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고채 가중치(β1) = a / (a + b + c + d)
회사채 가중치(β2) = b / (a + b + c + 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c / (a + b + c + 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 / (a + b + c + 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text{※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를 적용한다.

바. 세부적인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성-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17. 보험료 납입중지(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험료 납입중지(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18.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사항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해당보장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2) 위 1)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는 납입이 중지됨.

19.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다.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라.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

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21. 기 타

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나. 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여 범용으로 판매할 수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함.

다.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함.